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1월 10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8년 1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8년 1월 18일)
상정
- 제1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8년 1월 18일)
원안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김영의)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부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과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
정참여 기회를 확대 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
도모함을 목적으로 1999년 2월 18일부터 운영하여 오던 조례를

- 부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등에 적합하게 용어를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민간위탁” 및 “수탁기관”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하여 이해를 돕도록 함.(안 제2조)
- 나. 이 조례의 적용범위 및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다. 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민간위탁계획의 수립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5조 신설)
- 라.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마. 민간위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부천시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
- 바. 수탁기관의 사무처리 및 수탁기관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 사. 시장의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및 수탁기관의 사무편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아.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13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 질 의 내 용 | 답 변 내 용 |
|---------|---------|
| 없 | 음 |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제210호 |
| 의결 년월일 | 2008. 1. 23 (제141회) |

제출년월일 : 2008. 1. 10.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조문을 신설하는 한편,
-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민간위탁” 및 “수탁기관”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하여 이해를 돕도록 함.(안 제2조)
- 나. 이 조례의 적용범위 및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다. 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민간위탁계획의 수립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5조 신설)
- 라.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마. 민간위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부천시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

바. 수탁기관의 사무처리 및 수탁기관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사. 시장의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및 수탁기관의 사무편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아.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함.
(안 제13조)

□ 첨 부 :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이하 “위탁사무”라 한다)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 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 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

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부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민간위탁계획의 수립)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및 위탁 관련 법규에 관한 사항
2. 민간위탁의 목적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
3. 민간위탁의 범위 및 내용에 관한 사항
4. 민간위탁의 추진일정에 관한 사항

5. 민간위탁의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

6. 민간위탁으로 인한 기대효과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참고사항 등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이 공개모집하는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부천시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부천시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가 끝난 후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간위탁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신청인의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현장을 확인하며,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탁사무의 처리)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사무관리 규정」 제13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한다.

③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이 지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제10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협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조치사항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지휘·감독)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2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탁공고 중이거나 협약이 체결되어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협약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행 조례)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정 1999. 02. 18 조례 162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외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 ①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부천시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민간위탁사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④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부천시위원회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협약체결등) ①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무이행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지휘·감독) ①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사무편람) ①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처리상황의 감사) ①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999.02.18 조례 제16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위탁공고중이거나 협약이 체결되어 위탁운영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보며 협약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조 내지 제10조를 삭제하며, 제11조 및 제12조를 제5조 및 제6조로 한다.

제4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부천시다목적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6항을 삭제한다.

①복지시설은 시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내지 제12조를 삭제하고, 제13조 내지 제18조를 제9조 내지 제14조로 하며, 제11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12조중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 다음에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삽입한다.

③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조 내지 제11조를 삭제한다.

제8조(위탁운영)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 내지 제8조를 삭제하며, 제9조 내지 제13조를 제6조 내지 제10조로 하고, 제14조를 삭제하며, 제15조를 제11조로 한다.

제5조(위탁운영)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부천시공설묘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권한위임) 시장은 공설묘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부천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탁경영) 시장은 상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조 내지 제11조를 삭제하며, 제12조를 제7조로 한다.

제6조(위탁운영) ①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한 서류심사로 하되 만료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⑧부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조 내지 제12조를 삭제하며, 제13조를 제9조로 한다.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문화의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⑨부천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경영위탁) 시장은 시민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⑩부천시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이외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한다.

제8조제1항중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로 한다.

⑪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위탁운영) 시장은 장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⑫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

영할 수 있다.

⑬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탁처리) 시장은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⑭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4조를 삭제하며, 제15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①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부천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공단

2.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수탁하여 1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②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⑮부천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조 내지 제7조를 삭제하며, 제8조 내지 제20조를 제4조 내지 제16조로 하고, 제7조제2항중 "제15조제2항"을 "제11조제2항"으로, 동조제3항중 "제8조제1항 및 제10조"를 "제4조 제1항 및 제6조"로 하며, 제9조제1호중 "제12조제1항제3호"를 "제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2조의2(위탁운영) 시장은 노동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6)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7조를 삭제하며, 제28조 및 제29조를 제27조 및 제28조로 한다.

제26조(위탁관리) ①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